

-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5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05년 6월 2일

제안 이유

○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단지관리 및 공단임대사무 권한을 위탁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주요 내용

○ 기업지원과 위탁사무에 “오창과학산업단지(공단 임대사무 포함) 관리 권한” 신설

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“오창과학산업단지(공단 임대사무 포함) 관리 권한”을 위탁사무에 추가 삽입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관리업무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, 수탁기관은 2005. 5. 2일 설립된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.

○ 위탁에 관한 근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제31조에 두고 있으며, 검토결과, 조례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.

- 다만,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기능과 조직 등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, 위탁사무 내용이 “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 권한”으로서 다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데, 구체적으로 업무위탁의 내용은 무엇이고, 어느 범위까지 위탁되는지, 그리고 위탁내용중 공단 임대사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**※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**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**※ 위임·위탁사무의 정의**

- **사무위임** :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중 일부를 보조 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권한과 책임을 행하도록 하는 것임
- **위탁사무** :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장의 권한중 일부를 하위 기관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기관·단체·민간에 맡겨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임
- **대행사무** :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경우와 대행기관이 그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하는 것으로 됨

붙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